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9. 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0. 9. 14

라. 상정일자 : 2010. 9. 27(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한덕중
- 검토보고 : 교육전문위원 장원희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 주요현안 및 요청과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입법담당 정원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내 교육입법담당 지원인력 정원을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8명→9명, 1명 증원)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분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5명에서 1명 감소한 3,064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내에 교육입법팀 신설을 위하여 지원인력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0년 9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당초 8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5명에서 1명 감소한 3,064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073명에는 변동이 없음.
- 금번 조례개정안은 의원들의 교육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입법담당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 문화, 산업, 건교입법 등 타 상임위원회의 입법지원 조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입법활동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가. 찬성 : 권용오, 김원희, 김영태,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4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 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회 사무처 정원 : <u>8명</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u>3,06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p> <p>1.-----</p> <p>-----</p> <p>----- : <u>9명</u></p> <p>2. -----</p> <p>-----</p> <p>----- : <u>3,064명</u></p>